HANSHIN
THEHUE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본 아파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1.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 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 소독제, 비 접촉체온계, 정부 지침에 따른 출입자 명단 기재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2.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서류 심사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접수 및 방문계약 체결을 계획 중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 할 예정입니다.
■ 청약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절차 시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 방문 시 최단시간 내 처리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감염증 확산 추세 변동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거나 전화, 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상담을 위해 상담전화 회선(1533-4460)을 운영할 예정이오나, 전화문의 건 증가 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상호 오인하거나 누락 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남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남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에 따른 입주자 선정대상이 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8.)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1.08.18. 이전부터 계속 거주)우선합니다.

예)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 1순위(해당지역)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부산 및 경남 거주 – 1순위(기타지역) 신청 가능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해당지역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일반1순위 기타지역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 정	08월 29일(월)	08월 30일(화)	08월 31일(수)	09월 01일(목)	09월 07일(수)	09월 13일(화) ~ 09월 19일(월)	09월 20일(화) ~ 22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구비서류 등을 지참 • 구비서류는 사업주체 홈페이지 참고 • 검수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울산 남구 달동 979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5622호(2022.08.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836-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8~31층 3개동 총 3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59세대[일반[기관추천] 30세대, 다자녀가구 30세대, 신혼부부 60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3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22-000513	01	62.8262A	62A	62.8262	22.4793	85.3055	47.8412	133.1467	19.3894	53	5	5	10	1	5	26	27	2
		02	62.1734B	62B	62.1734	22.7611	84.9345	47.3442	132.2787	19.1879	54	5	5	11	2	5	28	26	2
		03	72.8648	72	72.8648	24.4344	97.2992	55.4851	152.7843	22.4875	27	3	3	5	1	3	15	12	1
		04	84.6229A	84A	84.6229	28.6080	113.2309	64.4389	177.6698	26.1163	84	8	8	17	3	8	44	40	3
		05	84.4433B	84B	84.4433	28.4298	112.8731	64.3022	177.1753	26.0608	58	6	6	12	1	6	31	27	2
		06	84.9177C	84C	84.9177	29.6058	114.5235	64.6635	179.1870	26.2073	26	3	3	5	1	3	15	11	1
합 계											302	30	30	60	9	30	159	143	11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생활지원센터, 주민회의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본 건축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시설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평형환산방법 : 주택공급면적(㎡) x 0.3025 또는 주택공급면적(㎡) ÷ 3.3058)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표기	라인	층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격(계)	계약금(10%)	중도금(60%) 1차(10%) 23.02.15	2차(10%) 23.07.14	3차(10%) 24.01.15	4차(10%) 24.08.16	5차(10%) 24.12.16	6차(10%) 25.04.15	잔금(30%) 입주지정일
62A	101동 3호 102동 4호	2~4층	6	141,878,152	362,121,848	504,0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51,200,000
		5~9층	10	148,634,255	379,365,745	528,0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58,400,000
		10~19층	18	154,827,349	395,172,651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20층 이상	19	157,923,895	403,076,105	561,0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62B	102동 1호, 3호	2~4층	6	147,226,733	375,773,267	523,0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56,900,000
		5~9층	10	152,856,819	390,143,181	543,0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62,900,000
		10~19층	18	156,797,878	400,202,122	557,0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167,100,000
		20층 이상	20	159,894,425	408,105,575	568,0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70,400,000
72	102동 2호	2~4층	3	165,806,015	423,193,985	589,0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176,700,000
		5~9층	5	171,999,109	439,000,891	611,0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10~19층	9	176,503,177	450,496,823	627,0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188,100,000
		20층 이상	10	180,162,733	459,837,267	640,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192,000,000
84A	101동 1호 103동 2호, 5호	2~4층	9	200,994,049	513,005,951	714,0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214,200,000
		5~9층	15	208,594,664	532,405,336	741,0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22,300,000
		10~19층	27	214,224,749	546,775,251	761,0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20층 이상	33	218,447,313	557,552,687	776,0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232,800,000
84B	103동 3호, 4호	2~4층	6	190,296,886	485,703,114	676,0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202,800,000
		5~9층	10	197,615,997	504,384,003	702,0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210,600,000
		10~19층	18	204,653,604	522,346,396	727,0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218,100,000
		20층 이상	24	208,594,664	532,405,336	741,0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22,300,000
84C	101동 2호	2~4층	3	201,557,057	514,442,943	716,0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214,800,000
		5~9층	5	209,157,672	533,842,328	743,0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222,900,000
		10~19층	9	214,787,758	548,212,242	763,0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228,900,000
		20층 이상	9	219,010,322	558,989,678	778,0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233,40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	62.8262A	62.1734B	72.8648	84.6229A	84.4433B	84.9177C
약식표기	62A	62B	72	84A	84B	84C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 · 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수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 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 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함.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 용	–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부위에 열손실방지 조치계획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 용	– 단열재는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 –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바닥인 경우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 열관류저항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남부지역) 이상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 용	– 단열재가 방습층으로 인정되는 재료 사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8조1호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 용	–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 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 용	– 전동기는 고효율 기자재인증제품 사용(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용 송풍기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 용	–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또는 KS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 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관련법(수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 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 용	–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 용	–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름
	조명설치(다목)	적 용	–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 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적용 – 대기전력차단콘센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159호)에 의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 용	–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공동주택성능등급) : 해당사항 無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57g 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이상	지하 1층 : 2.7m이상(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 2층 : 2.3m이상(택배차량 진입불가) 지하 3층 : 2.3m이상(택배차량 진입불가)	지하 1층 : 2.7m이상 지하 2층 : 2.3m이상 지하 3층 : 2.3m이상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통신
회사명	㈜건축사사무소광장	화성감리	㈜일신이앤에프
감리금액	1,325,483,500	463,500,000	379,5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우리자산신탁㈜	㈜마메종	한신공영㈜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에이동 1808호(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80111-0567032	110111-0075683

■ **견본주택 :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
■ **사업지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836-3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uj-thehue.com**
■ **분양문의 : 1533-446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분양일정			
특별공급 청약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년 08월 29일(월)
일반공급 청약	1순위	해당	2022년 08월 30일(화)
		기타	2022년 08월 31일(수)
2순위			2022년 09월 01일(목)
당첨자 발표일			2022년 09월 07일(수)
사전자격확인서류 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022년 09월 13일(화) ~ 09월 19일(월)
당첨자 계약			2022년 09월 20일(화) ~ 22일(목)

총 302세대(전용 62A, 62B, 72, 84A, 84B, 84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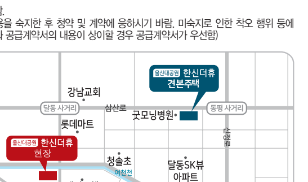

견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현 장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836-3번지 일원

문의 **1533-4460**